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박 정 환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 및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4호 현행 위원회 명칭인 ‘경제도시위원회’ 를 ‘도시환경위원회’ 로 변경하였고,
- 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을 ‘기획경제국’ 으로, ‘자치행정국’ 을 ‘행정교육국’ 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 같은 항 제3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중 ‘복지문화국’ 을 ‘복지증진국’ 으로 변경하고, ‘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을 추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3조제2항제4호 ‘경제도시위원회’ 를 ‘도시환경위원회’ 로 명칭 변경하였고, 현행 ‘경제환경국’ 의 소관 사항을 ‘문화환경국 사무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25
----------	----------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 의 자: 박정환, 고명옥, 도하석,
이영빈, 박종길, 장호섭,
정창근, 정순옥, 임미연,
서민우, 김해철, 김기열,
강한곤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제도시위원회’ 를 ‘도시환경위원회’ 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 및 신설(안 제3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교육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증진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문화환경국 사무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경제도시위원회</u> 8명 이내</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기획조정실</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자치행정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생략)</p> <p>3. 복지문화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복지문화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도시환경위원회</u> -----</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기획경제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행정교육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복지증진국</u>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현행 나목과 같음)</p>

<p>4. <u>경제도시위원회</u></p> <p>가. <u>경제환경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생략)</p>	<p>4. <u>도시환경위원회</u></p> <p>가. <u>문화환경국</u> 사무 중 <u>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u> -----</p> <p>-</p> <p>나. (현행과 같음)</p>
---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